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2. 1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2.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2. 27.

2. 제안이유

- 거창사과전망대 내에 설치되는 『거창농특산물판매장』을 민간 위탁하여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 능력을 갖춘 거창군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위탁개요

- 시설명: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 위치: 거창한휴게소 사과전망대(광주방향)
- 판매면적: 64.73m²
 - 주요시설: 판매대, 진열장, 쇼케이스 2대, 냉장고, 진열대, 냉난방공조시설, POS 시스템 등
- 위탁대상: 농특산물판매장 유지·관리 및 농특산물 판매·홍보
-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광대고속도로 거창한휴게소(광주방향) 사과전망대 내에 설치되는 『거창농특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은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항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농업인단체 등에 『거창농특산물 판매장』을 3년간 민간위탁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 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 없음